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사례로 답을 찾다

- '23-24년 국내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결 과정 담은 사례집 발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망하고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한 과제들을 엮어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을 발간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업 투자 애로사항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한 총 105건의 투자 애로사항 중 42건을 선정해 유사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은 기업이 겪는 다양한 투자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프라, 인허가, 재정·세제 등 5가지 분야별로 정리하여 기업이 유사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문제 상황, 해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의 접근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사례집은 산업부 홈페이지 누리집(www.motie.go.kr)의 ‘정책·정보 - 간행물’ 게시판에서도 전자 파일로도 제공받아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발간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실질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한편, 투자 문제 해결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조정웅 (044-203-4236)
			주무관	정은수 (044-203-4239)

□ 분류 및 내용

- '23년~24년 해결 완료 투자 애로사항 60건 중 42건 반영
- 민원 목적 및 해결 과정 등에 따라 5개 항목으로 분류
 - I. 제도 개선 (16건) - 과도하고 불필요한 투자 규제·법령 등 개정
 - II. 신속 행정 (12건) - 행정 절차 지연으로부터 빠른 구제
 - III. 인프라 (4건) - 전기, 가스 등 공장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 IV. 인허가 (4건) - 개발행위, 증축 등 인허가를 위한 법리적 검토 지원
 - V. 재정·세제 (6건) - 투자 프로젝트 예산 관련 지원 안내

□ 구성

- 투자 애로사항 발생 배경 → 문제 상황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순 설명
-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유권 해석 등 추가

제도 개선

01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기준 완화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이차전지 소재 제조사인 A사는 이차전지 주요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20년 말 테크노 산업단지에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배출업체는 입주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의 공장은 가동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아크릴로니트릴'이 배출되어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공장은 이미 '20년 말에 준공한 상황이고 2년간 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사는 산업부에 해당 지자체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업종 요건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정밀화학 및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배출시설 기준에 따라 '아크릴로니트릴'은 0.4 mg/m³를 적용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월 A사가 산업부에 배출시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산업부 소관과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환경 관련 법령보다 환경규제를 강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당 지자체와 여러번 협의를 거쳐 2월 28일 "A사가 아크릴로니트릴 배출농도를 0.4 mg/m³ 이하로 배출되도록 시설을 보완한다면 환경청과 재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후 3월 15일 환경청 협의 후 5월 11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접수하였고 5월 23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 6월 15일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를 지자체에 발송하였습니다.

· 6월 29일 지자체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제한업종을 변경하여 고시하면서 A사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3조,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8

제도 개선 | 9

□ 향후 계획

- 지역 상의,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에 단행본 배포

붙임2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절차

□ 전국 상공회의소 문의 및 접수처 안내

- 지역별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 우편, 이메일 등 자유 양식으로 상시 접수
-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 투자 프로젝트 애로 발굴시 병행 접수 가능

구분	소속 및 부서	연락처	메일주소
전국 상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02-6050-3721	jhwayong@korcham.net
	부산상공회의소 기업규제개선팀	051-990-7042	jiman@korcham.net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	053-222-3066	syjang0719@korcham.net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032-810-2863	soompk@incham.net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062-350-5862	aipjh@korcham.net
	대전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042-480-3022	apatheia@korcham.net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052-228-3072	research@ucci.or.kr

□ 처리 추진 절차

- 접수된 투자 애로사항은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 문제 상황 파악 후,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관련 기관과 협의 거쳐 해결방안 논의
- 신청기업 및 접수처에 진행 사항을 포함해 검토 및 애로 해소 결과 공유

